

의안번호	2201128
의 퇴 인	이해식 의원
회 답 일	2024. 7. 3.
추계번호	24C1499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30조의2 (장애인 가족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고, 해당 센터의 설치·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0조의2 (장애인 가족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직접 설치·운영하거나 위탁한 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¹⁾에 따라 “수행기관의 지정”을 통하여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

1) 「장애인복지법」

제30조의2(장애인 가족 지원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[표 1]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아동가족지원센터 현황

(단위: 개소)

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	—	합 계
15	2	1	2	1	2	1	1	—	110
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	
17	3	6	6	3	4	12	21	2	

주: 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시스템(nise.go.kr) 7월 1일 검색 기준

자료: 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시스템(nise.go.kr)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가족지원기관의 운영방식이 현행 “수행기관 지정”에서 “직접 설치·운영 또는 위탁”으로 변경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수와 사업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
 - 안 제30조의2제6항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설치·운영 또는 위탁할 센터의 수와 그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